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 신설로 기존 조항이 순연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
(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제9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9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7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제10항 단서”를 “제11항 단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8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증특례확인서

제 호		실증특례 확인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확인내용	명칭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제10항, 제87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서비스 [] 제품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실증특례 확인 내용	확인번호		유효기간
	실증특례 대상 법령		
	지역		
	기간		
	규모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신청 사유	[] 유효기간의 만료 전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
	기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0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9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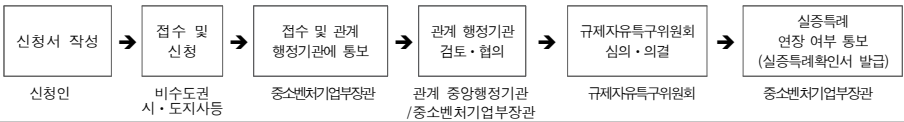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1부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1부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사유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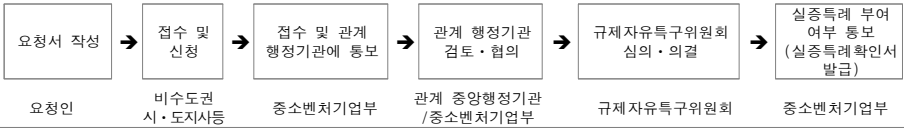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1.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처리 절차



임시허가서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임시허가 내용	명칭	
	유효기간	
	주요 내용	
	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같은 조 제1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제10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역혁신 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등	명칭		
	유형	[] 서비스 [] 제품 [] 서비스와 제품 융합 [] 기타	
	주요 내용		
기존 임시허가 내용	임시허가 번호		유효기간
	허가조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해 붙인 조건		
유효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신청 사유		
	기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 포함된 결과보고서 1부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1부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1부									
	4. 임시허가서 사본 1부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시행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 계획서 1부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신청	→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 검토·협의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여부 통보 (임시허가서 발급)
신청인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요청인	회사명(성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사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 제9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1부 3. 임시허가 대상인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1부 4. 법 제90조제5항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부.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